

의안번호	2211618
의 퇴 인	배준영 의원
회 답 일	2025. 8. 20.
추 계 번호	25F38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는 2026년 317.5억원, 2028년 317.5억원 등 2026년에서 2028년까지 3년간 총 952.6억원(연평균 317.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등 농어업관련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15조제1항): 3년간 -27.6억원(연평균 -9.2억원)
 - 지방농수산물공사가 취득한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15조제2항): 3년간 -925억원(연평균 -308.3억원)
 - 단, 지방농수산물공사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2024년 이후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의 업무용 부동산(2023년 취득)에 대한 재산세 감면실적을 파악할 수 없어 동 비용추계는 과소추계 되었을 가능성 존재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지방세, 2026~2028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누적	연평균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등 농어업 관련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안 제15조제1항)	-9.2	-9.2	-9.2	-27.6	-9.2
지방농수산물공사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안 제15조제2항)	-308.3	-308.3	-308.3	-925.0	-308.3
합 계	-317.5	-317.5	-317.5	-952.6	-317.5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5조 제1항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와 농수산물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8.12.31.	
2	안 제15조 제2항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 지방농수산물공사가 도매시장의 관리 및 농수산물의 유통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8.12.31.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15조 제1항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	
2	안 제15조 제2항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세수효과는 2028년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
- (안 제15조제1항)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등 농어업 관련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은 없다고 가정하고, 재산세 감면실적은 2023년 감면실적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취득세) 향후 5년(2026~2030년)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수산물유통자회사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계획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없다고 가정¹⁾
 - (재산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수산물유통자회사의 향후 부동산 취득계획이 없으므로 2023년 기준 재산세 감면액(9.2억원)이 유지된다고 가정
- (안 제15조제2항) 지방농수산물공사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수효과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통계연감」에 수록된 감면실적을 바탕으로 다음의 가정을 적용하여 추정
- (취득세) 2023년을 제외하고 최근 4년(2019~2022년)간 지방농수산물공사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연평균 취득세 감면액은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최근 4년간 평균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 2023년의 경우 2023.12.28. 출범한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 준비과정에서 신규 업무용 부동산 취득 소요가 발생하여 취득세 감면액이 다른 연도에 비해 컸으며, 이는 특이소요로 간주하여 추계에서 제외
 - (재산세) 최근 5년(2019~2023년)간 지방농수산물공사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액의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최근 5년간 평균 재산세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 단, 지방농수산물공사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2024년 이후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의 업무용 부동산(2023년 취득)에 대한 재산세 감면실적을 파악할 수 없어 동 비용추계는 과소추계 되었을 가능성 존재

1)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등에서 향후 5년간 업무용 부동산 취득계획이 없음을 확인

3. 상세 추계내역

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 기한 연장(안 제15조제1항)

(1) 제도개요 및 추계방법

□ (제도 개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와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 농수산물 유통시설 및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용 부동산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감면율: 취득세 50%, 재산세 50% 감면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8.12.31.

□ (추계방법)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등 농어업 관련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규정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

- (취득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향후 5년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수산물유통자회사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계획이 없으며, 최근 취득세 감면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취득세 세수 효과는 없는 것으로 추계
- (재산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수산물유통자회사의 업무용 부동산 추가 취득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재산세 변동소요도 크지 않으므로, 2023년 감면실적(9.2억원)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표 2]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액: 2019~2023년
(단위: 억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감면실적	22.0	10.4	10.8	9.7	9.2
－ 취득세	15.3 ¹⁾	1.5	1.6	0.1	0
－ 재산세	6.7	8.8	9.2	9.7	9.2

주: 1)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정부비축기지를 인수함에 따라 발생한 감면실적으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해당 경우가 통상적으로는 자주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2)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이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 재산세는 2026년 9.2억원, 2028년 9.2억원 등 2026년에서 2028년까지 3년간 총 27.6억원(연평균 9.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표 3]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6~2028년, 재산세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누적	연평균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안 제15조제1항)	-9.2	-9.2	-9.2	-27.6	-9.2

나. 지방농수산물공사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안 제15조제2항)

(1) 제도개요 및 추계방법

- (제도개요) 지방농수산물공사가 도매시장의 관리 및 농수산물의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감면액: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100%(100%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
 - 지방농수산물공사: 서울시농수산물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8.12.31.
- (추계방법) 지방농수산물공사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규정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
 - (취득세) 2023년을 제외하고 최근 4년(2019~2022년)간 지방농수산물공사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연평균 취득세 감면액은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최근 4년간 평균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최근 5년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액: 0.9억원
- 2023년의 경우 2024.1.5. 출범한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 준비과정에서 신규 업무용 부동산 취득 소요가 발생하여 취득세 감면액이 다른 연도에 비해 컸으며, 이는 특이소요로 간주하여 추계에서 제외
- (재산세) 최근 5년(2019~2023년)간 지방농수산물공사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액의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최근 5년간 평균 재산세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최근 5년간 연평균 재산세 감면액: 307.5억원
 - 단, 지방농수산물공사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2024년 이후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의 업무용 부동산(2023년 취득)에 대한 재산세 감면실적을 파악할 수 없어 동 비용추계는 과소추계 되었을 가능성 존재

[표 4] 지방농수산물공사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액: 2019~2023년
(단위: 억원)

	2019	2020	2021	2022	2023
취득세	3.1	0.2	0.1	0.1	179.2
재산세	297.9	307.0	309.0	324.1	299.3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2)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지방농수산물공사가 취득한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는 2026년 308.3억원, 2028년 308.3억원 등 2026년에서 2028년까지 3년간 총 925.0억원(연평균 308.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표 5]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6~2028년, 취득세 및 재산세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누적	연평균
지방농수산물공사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안 제15조제2항)	-308.3	-308.3	-308.3	-925.0	-308.3
- 취득세	-0.9	-0.9	-0.9	-2.6	-0.9
- 재산세	-307.5	-307.5	-307.5	-922.4	-307.5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신미정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신미정	02-6788-4837	mjshin@assembly.go.kr